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8회 제2차 정례회

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(의회사무국)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12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2. 17.

운영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(의회사무국)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- 제출일자: 2024. 12. 2.
- 회부일자: 2024. 12. 3.
- 검토기간: 2024. 12. 5. ~ 12. 9.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3. 추경예산안 편성 요인

-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
- 법정 필수경비(인건비 등) 부족분 반영 및 집행잔액 감액
- 불요불급한 세출 부분에 대한 삭감 조정

4. 추경예산안 내역(의회사무국 소관)

가. 세입예산: 해당 없음

나. 세출예산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[%]
의회사무국	4,334,713	4,555,547	△ 220,834	△ 4.85
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	1,740,263	1,729,212	11,051	△ 0.64
합리적인 인사행정	3,298	7,682	△ 4,384	△ 57.07
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	244,200	394,600	△ 150,400	△ 38.11
인력운영비 (의회사무국)	2,253,855	2,304,489	△ 50,634	△ 2.20
기본경비 (의회사무국)	93,097	119,564	△ 26,467	△ 22.14

다. 명시이월

(단위: 천원)

구 분	사 업 명	이월액
의회사무국	상임위원회실 환경개선 집기 대체구입	39,153

주요 편성 내역

- 상임위원회실 환경개선 집기 대체구입 39,153천원 신규 편성
-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집행잔액 30,720천원 (의원 27,490, 직원 3,230) 감액 편성
- 의원연수 및 타시도 비교견학 국내여비 집행잔액 35,000천원(의원 21,000, 직원 14,000) 감액 편성
- 의원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2,100천원 감액 편성
- 직원 증원 및 정원 외 발령에 따른 보수 부족분 19,928천원 증액 편성

-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원 근로자 보수 69,062천원 감액 편성
 - 의무절감(5%) 편성목 유보액 27,145천원 감액 편성
- ※ 5% 절감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불가

5. 검토의견

-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3억 3천 47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.85% 감소한 2억 2천 8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함.
-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실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화된 집기 대체구입비 3천 915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고, 2024년 1월 1일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 및 정원 외 발령에 따른 보수 부족분 1천 99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,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집행잔액 3천 72만원, 의원연수 및 타시도 비교견학 국내여비 집행잔액 3천 5백만원, 의원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천 210만원, 임기제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및 공무원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보수 6천 906만 2천원, 의무절감 편성목 유보액 2천 71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임.
-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대부분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, 직원 보수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, 당초예산 편성 시 세심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